|  |  |  |
| --- | --- | --- |
| **기업 혼합성 투자업무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41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이하 ‘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 혼합성 투자업무의 기업소득세 처리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기업의 혼합성 투자업무는 권익과 채권의 이중 특성을 겸한 투자업무를 가리킨다. 하기조건에 동시에 부합하는 혼합성 투자업무는 본 공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처리한다.  (1) 피투자기업이 투자를 받아들인 후, 투자계약 또는 협의 약정한 이율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자(또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최저금리, 고정이윤, 고정배당금, 이하 동일)를 지급한다.  (2) 명확한 투자기한 또는 특정한 투자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투자기간이 만료 되거나 특정조건을 만족한 경우, 피투자기업은 투자를 회수하거나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3)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4) 투자기업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5)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일상적인 생산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2.본 공고 제1조 규정에 부합하는 혼합성 투자업무는 하기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처리한다.  (1) 피투자기업이 지급한 이자에 대해 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이자 지급일에 수입을 확인하고 당기 소득세과세표준에 산입해야 한다. 피투자기업은 이자 지급일에 이자를 지출해야 함을 인식 하고 세법과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약간 문제에 대한 공고》(2011년 제34호) 제1조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해야 한다.  (2) 피투자기업이 회수한 투자에 대해 투자 쌍방은 회수 시 회수가격과 투자원가 간의 차액을 채무조정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 소득세과세표준에 각각 산입해야 한다.  3. 본 공고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미 세무 처리한 혼합성 투자업무는 더 이상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7월 15일 |  | **关于企业混合性投资业务企业所得税处理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3年第41号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及其实施条例（以下简称税法）的规定，现就企业混合性投资业务企业所得税处理问题公告如下：  　　一、企业混合性投资业务，是指兼具权益和债权双重特性的投资业务。同时符合下列条件的混合性投资业务，按本公告进行企业所得税处理：  　　（一）被投资企业接受投资后，需要按投资合同或协议约定的利率定期支付利息（或定期支付保底利息、固定利润、固定股息，下同）；  　　（二）有明确的投资期限或特定的投资条件，并在投资期满或者满足特定投资条件后，被投资企业需要赎回投资或偿还本金；  　　（三）投资企业对被投资企业净资产不拥有所有权；  　　（四）投资企业不具有选举权和被选举权；  　　（五）投资企业不参与被投资企业日常生产经营活动。  　　二、符合本公告第一条规定的混合性投资业务，按下列规定进行企业所得税处理：  　　（一）对于被投资企业支付的利息，投资企业应于被投资企业应付利息的日期，确认收入的实现并计入当期应纳税所得额；被投资企业应于应付利息的日期，确认利息支出，并按税法和《国家税务总局关于企业所得税若干问题的公告》（2011年第34号）第一条的规定，进行税前扣除。  　　（二）对于被投资企业赎回的投资，投资双方应于赎回时将赎价与投资成本之间的差额确认为债务重组损益，分别计入当期应纳税所得额。  三、本公告自2013年9月1日起执行。此前发生的已进行税务处理的混合性投资业务，不再进行纳税调整。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3年7月15日 |